

##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제정   | 2005. 10. 5  | 조례 제 663호       |
| 개정   | 2006. 1. 11  | 조례 제 791호       |
|      | 2006. 4. 12  | 조례 제 799호       |
|      | 2006. 10. 13 | 조례 제 831호       |
|      | 2006. 12. 29 | 조례 제 856호       |
| 전문개정 | 2007. 7. 1   | 조례 제 884호       |
| 개정   | 2007. 12. 17 | 조례 제 910호       |
| 전문개정 | 2008. 12. 29 | 조례 제 966호(제명개정) |
| 개정   | 2009. 6. 26  | 조례 제1039호       |
|      | 2009. 12. 29 | 조례 제1059호       |
|      | 2010. 2. 23  | 조례 제1070호       |
|      | 2010. 8. 2   | 조례 제1091호       |
|      | 2010. 12. 17 | 조례 제1117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1. 7. 8   | 조례 제1155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1. 12. 15 | 조례 제1192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2. 3. 2   | 조례 제1216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2. 9. 6   | 조례 제1243호       |
| 일부개정 | 2013. 3. 6   | 조례 제1273호       |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내지 제120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,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·사업소, 하부행정기관인 구, 읍·면·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6. 26, 2009. 12. 29, 2010. 8. 2, 2010. 12. 17>

1. 직속기관 : 농업기술센터, 처인구 보건소, 기흥구 보건소, 수지구 보건소
2. 사업소 : 평생교육원, 도시사업소, 상하수도사업소
3. 하부행정기관 : 처인구, 기흥구, 수지구, 포곡읍, 모현면, 남사면, 이동

면, 원삼면, 백암면, 양지면, 중앙동, 역삼동, 유림동, 동부동, 신갈동, 영덕동, 구갈동, 상갈동, 기흥동, 서농동, 구성동, 마북동, 동백동, 상하동, 보정동, 풍덕천1동, 풍덕천2동, 신봉동, 죽전1동, 죽전2동, 동천동, 상현1동, 상현2동, 성북동

제3조(국장 및 실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시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·담당관·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·보건소의 소장의 직급, 사업소의 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읍·면·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소재지) 시 본청,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.

## 제2장 시 본청

제5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, 재정경제국, 문화복지국, 산업환경국, 도시주택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 <개정 2013. 3. 6>  
[전문개정 2010. 12. 17]

제6조(보좌기관) 부시장 밑에 공보관, 감사담당관,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둔다. <개정 2013. 3. 6>  
[전문개정 2010. 12. 17]

제7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 자치행정국에는 행정과, 정책기획과, 회계과, 정보통신과, 민원여권과를 둔다. <개정 2010. 12. 17, 2013. 3. 6>

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3. 3. 6>

1. 총무, 의전, 복무, 인사, 선거, 공무원 교육, 후생복지,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
2.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, 조직관리, 시의회, 국제교류, 통계에 관한 사무
3. 지출·계약, 국·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무

4. 행정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무

5. 고객만족, 민원행정, 민간협력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

제8조(재정경제국에 두는 과) ① 재정경제국에 재정법무과, 세정과, 징수과, 지역경제과, 기업지원과를 둔다.

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예산편성 및 집행, 투자심사, 재정전략 및 법무에 관한 사무

2. 지방세, 자금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

3.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

4. 지역경제, 고용, 일자리에 관한 사무

5. 기업지원, 기업유치, 통상협력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3. 3. 6]

제9조(문화복지국에 두는 과)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, 체육진흥과, 복지정책과, 노인장애인과, 여성가족과, 아동보육과를 둔다. <개정 2013. 3. 6>

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2. 9. 6, 2013. 3. 6>

1. 문화예술, 관광,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무

2.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

3. 보훈, 사회서비스, 무한돌봄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

4.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

5. 여성복지, 다문화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

6.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무

[전문개정 2010. 12. 17]

[중전 제8조에서 이동 <2013. 3. 6> ]

제10조(산업환경국에 두는 과) ① 산업환경국에 농업정책과, 산림과, 환경과, 녹색성장과, 청소행정과, 위생과를 둔다.

② 산업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농업, 축산 및 가축에 관한 사무

2. 산림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무

3. 환경보전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무

- 4. 녹색성장, 대기, 에너지에 관한 사무
- 5. 청소, 재활용 및 환경시설관리에 관한 사무
- 6. 위생 및 원산지에 관한 사무

[전문개정 2013. 3. 6]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<2013. 3. 6> ]

제11조(도시주택국에 두는 과)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건축행정과, 주택과, 토지정보과를 둔다. <개정 2013. 3. 6>

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3. 3. 6>

- 1.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
- 2.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
- 3. 건축에 관한 사무
- 4. 주택에 관한 사무
- 5. 지적,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

[전문개정 2010. 12. 17]

[중전 제10조에서 이동 <2013. 3. 6> ]

제12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, 하천방재과, 교통정책과, 대중교통과, 차량등록과를 둔다. <개정 2013. 3. 6>

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3. 3. 6>

- 1. 도로, 교량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
- 2. 하천계획, 자연재해, 인위적 재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
- 3. 교통개선, 교통정보, 주차관리에 관한 사무
- 4. 대중교통, 운수 및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사무
- 5. 차량등록,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무

[전문개정 2010. 12. 17]

[중전 제11조에서 이동 <2013. 3. 6> ]

### 제3장 직속기관

## 제1절 농업기술센터

제13조(설치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[종전 제12조에서 이동 <2013. 3. 6> ]

제14조(소장) 센터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.

[종전 제13조에서 이동 <2013. 3. 6> ]

제15조(센터에 두는 과) ① 센터에 자원육성과, 기술지원과, 농촌테마과를 둔다. <개정 2009. 12. 29>

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2. 3. 2>

1.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
2.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
3.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
4.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
5.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
6. 농·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
7. 농작물 병충해 예방·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
8.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무
9.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
10.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
11.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
12.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·지도에 관한 사무

13. 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에 관한 사무

[종전 제14조에서 이동 <2013. 3. 6>]

제16조(상담소의 설치)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.

[종전 제15조에서 이동 <2013. 3. 6>]

제2절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

제17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·제10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·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, 읍·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

② 「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.

[종전 제16조에서 이동 <2013. 3. 6>]

제18조(소장등)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,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,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. <개정 2009. 12. 29>

② 보건소장은 시장의,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종전 제17조에서 이동 <2013. 3. 6>]

제19조(소관사무)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둔다. <신설 2009. 12. 29>

② 보건소장은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9. 12. 29>

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「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9. 12. 29>

[종전 제18조에서 이동 <2013. 3. 6>]

## 제4장 사업소

제20조(설치)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.

[중전 제19조에서 이동 <2013. 3. 6>]

제21조(소장) 사업소에 소장 및 원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<개정 2010. 12. 17>

제22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09. 6. 26, 2009. 12. 29, 2010. 12. 17, 2013. 3. 6>

### 1. 평생교육원

- 가.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
- 나.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관한 사무
- 다.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
- 라.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
- 마.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에 관한 사무
- 바.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부업알선에 관한 사무
- 사. 여성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무
- 아.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운영에 관한 사무
- 자.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
- 차.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
- 카.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
- 타.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
- 파. 기타 운영에 관한 사무

### 2. 도시사업소

- 가. 공원·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
- 나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
- 다. 용인경량전철사업 계획수립, 기술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무

- 라. 민간자본유치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
  - 마. 용인경량전철사업 시설인수 및 운영에 관한사무
  - 바. 용인경량전철사업 활성화 및 재정지원 대책에 관한 사무
  - 사. 기흥호수공원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
  - 아. 용인시민체육공원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
  - 자.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규모 공공용 건축물의 공사 시행
  - 차.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규모 공공용 건축물의 공사 지도·감독
  - 카. 기타 시장이 지시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
3. 상하수도사업소
- 가.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
  - 나.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
  - 다.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
  - 라. 송·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무
  - 마. 정수의 생산·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
  - 바.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
  - 사.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
  - 아. 용인하수처리장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
  - 자. 분뇨·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
4. 삭제 <2010. 12. 17>
5. 삭제 <2010. 12. 17>
6. 삭제 <2009. 6. 26>

## 제5장 하부행정기관

###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

제23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자치



구가 아닌 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.

제24조(구청장)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.

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과 읍·면·동장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5조(구에 두는 과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, 생활민원과, 민원봉사과, 세무과, 사회복지과, 산업환경과, 건설도시과, 건축과를 둔다. <개정 2010. 12. 17, 2011. 7. 8>

## 제2절 읍·면·동

제26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·면·동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·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27조(직무) 읍·면·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(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·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 발급업무, 통·리·반장 조직운영업무,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, 시장(구청장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.

제28조(읍·면·동장) 읍에는 읍장, 면에는 면장, 동에는 동장을 두며, 읍·면·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##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

제29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,166명이며, 다음 각 호와

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1. 7. 8, 2012. 3. 2, 2012. 9. 6, 2013. 3. 6>

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2,140명
-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6명

[전문개정 2010. 12. 17]

제30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제31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2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3조(한시정원)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은 별표 8과 같다.

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2006. 1. 11 조례 제79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4. 12 조례 제79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0. 13 조례 제83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2. 29 조례 제85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문화복지국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”으로 한다.

② 「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복지업무”를 “주민생활지원업무”로 한다.

부칙 <2007. 7. 1 조례 제88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총무담당간사”를 “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고,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4호를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.

② 「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중 “35인 이내”를 “40인 이내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지방행정, 문화복지, 경제환경, 건설도시 4개”를 “자치행정, 주민생활지원, 산업정책, 도시주택, 건설교통 5개”로 한다.

③ 「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조 중 “경제환경업무담당”을 “산업정책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④ 「용인시 주택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도시국장”을 “주택업무담당 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산업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산업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사회지도과장”을 “자원육성과장”으로, “기술지도과장”을 “기술지원과장”으로 각각 한다.

제15조 중 “사회지도과장”을 “자원육성과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사회지도과장”을 “자원육성과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“공보실, 감사담당관실”을 각각 “공보관, 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경제환경국”을 “산업정책국”으로, 동호나목 중 “건설도시국”을 “도시주택국”으로, 동호다목 중 “도시환경사업소”를 “하수도사업소”로, 동호라목 중 “다목”을 “라목”으로, 동호다목 내지 라목을 동호라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건설교통국에 속하는 사항

⑩ 「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내무위원장”을 “자치행정위원장”으로, 제3조의2제1항 중 “내무분과위원회”를 “자치행정위원회”로 한다.

⑪ 「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0조제2항 중 “도시환경사업소장”을 “도시주택국장”으로, 동조 제3항 중 “경제환경국장, 건설도시국장”을 “산업정책국장, 건설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07. 12. 17 조례 제91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2. 29 조례 제96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22명”을 “23명”으로 하고, “「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」”을 “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9. 6. 26 조례 제10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12. 29 조례 제105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2. 23 조례 제107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8. 2 조례 제109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행정서기관”을 “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23명으로 하며”를 “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로 정하며”로 한다.

부칙 <2010. 12. 17 조례 제111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산업정책국장”을 “경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도시주택국장”을 “도시사업소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산업정책국장, 건설교통국장”을 “경제환경국장, 도시주택국장, 건설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산업정책국장”을 “경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(SOS)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산업정책국장”을 “경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, 산업정책”을 “문화복지, 경제환경”으로 한다.

⑥ 「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8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실·국장, 산업정책업무 담당 실·국장”을 “문화복지업무 담당 실·국장,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·국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공보관, 대외협력관, 감사담당관, 정보문화기획단”을 “공보관, 감사담당관, 평생교육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주민생활지원국”을 “문화복지국”으로 하고, 동호나목 중 “산업정책국”을 “경제환경국”으로 하며, 동호라목 중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사회복지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다목 중 “건설사업단, 상수도사업소, 하수도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”를 “도시사업소, 상하수도사업소”로 한다.

⑧ 「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 중 “용인시 상수도사업소”를 “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 중 “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”을 “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”으로 하며, 별지 제3호서식 중 “용인시 상수도사업소”를 “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”로 한다.

⑨ 「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7조제1항 중 “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”을 “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 중 “상수도사업소”를 “상하수도사업소”로 한다.

부칙 <2011. 7. 8 조례 제115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“각 구청(건설교통과, 도시건축과)”을 “각 구청

(생활민원과, 건설도시과, 건축과)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1. 12. 15 조례 제119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직 전환대상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수가 당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2. 3. 2 조례 제121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9. 6 조례 제124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3. 6 조례 제127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, 문화복지, 경제환경, 도시주택, 건설교통 5개”를 “자치행정(지역안보), 재정경제, 문화복지, 산업환경, 도시주택, 건설교통 6개”로 한다.

② 「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복지업무 담당 실·국장, 경제환경업무 담당 실·국장”을 “자치행정업무 실·국장, 문화복지업무 담당 실·국장, 산업환경업무 담당 실·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자치행정국”을 “재정경제국”으로 하고, 별지 제3호서식 중 “세정과장”을 “징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정보통신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”은 “정보통신업무 담당 과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 중 “정보통신담당관”은 “정보통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문화복지국장, 경제환경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, 문화복지국장, 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(SOS)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⑪ 「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제1호, 제2호, 제3호의 “환경부서”를 각각 “녹색성장부서”로 한다.

⑫ 「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건축기획담당” 및 “건축과장”을 각각 “건축행정팀장”, “건축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⑬ 「용인시 경관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경관사업추진업무 담당국장”을 “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⑭ 「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



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나목부터 라목을 다목부터 마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조제2항제3호 중 나목의 “경제환경국”을 “산업환경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다목의 “도시사업소”를 “도시디자인담당관, 도시사업소”로 한다.

⑮ 「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3. 3. 6>

시 본청,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(제4조 관련)

| 기 관 명            |       |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용 인 시 청          |       |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<br>(삼가동 556)        |     |
| 용인시농업기술센터        |       |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<br>(사암리 858 - 1) |     |
|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      |       |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<br>(삼가동 556)        |     |
| 용인시기흥구보건소        |       |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3<br>(구갈동 352 - 3)    |     |
| 용인시수지구보건소        |       |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<br>(풍덕천동 720)        |     |
| 용인시<br>평생<br>교육원 | 평생교육과 |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<br>(삼가동 556)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동부도서관 |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<br>(역북동 504-1)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서부도서관 |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전길 23<br>(풍덕천동 1088)      |     |
| 용인시<br>도시사업소     |       |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<br>(삼가동 556)        |     |
| 용인시<br>상하수도사업소   |       |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<br>(삼가동 556)        |     |
| 용인시<br>처인구청      |       |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<br>(김량장동 286)          |     |
| 용인시<br>기흥구청      |       |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<br>(구갈동 355)           |     |
| 용인시<br>수지구청      |       |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<br>(풍덕천동 720)        |     |

| 기 관 명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할구역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처<br>인<br>구 | 포곡읍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<br>(삼계리 588 - 5)     | 포곡읍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모현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독점로 31 - 6<br>(갈담리 309)      | 모현면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남사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<br>(남사면 봉무리 438 - 1)  | 남사면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이동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<br>(송진리 750 - 3)    | 이동면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원삼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<br>(고당리 88 - 1)       | 원삼면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백암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<br>(백암리 495 - 3)     | 백암면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양지면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<br>(양지리 701 - 9)  | 양지면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중앙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8번길 7<br>(김량장동 303 - 3)      | 김량장동, 남동<br>일원     |
|             | 역삼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26번길 10<br>(역북동 518 - 4)      | 역북동, 삼가동<br>일원     |
| 유림동주민센터     |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<br>(유방동 475 - 4) | 유방동, 고림동<br>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동부동주민센터     |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<br>(마평동 533 - 8) | 마평동, 운학동<br>호동, 해곡동 일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기<br>흥<br>구 | 신갈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145번길 15<br>(신갈동 388 - 154) | 신갈동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영덕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15<br>(영덕동 974 - 7)        | 하갈동, 영덕동<br>일원     |
|             | 구갈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3<br>(구갈동 578)              | 구갈동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상갈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<br>(상갈동 472)               | 상갈동, 보라동<br>지곡동 일원 |
|             | 기흥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9번길 9<br>(공세동 388 - 23)       | 공세동, 고매동<br>일원     |
|             | 서농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644<br>(서천동 335 - 2)       | 농서동, 서천동<br>일원     |
|             | 구성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7번길 17<br>(언남동 342 - 15)    | 언남동, 청덕동<br>일원     |
|             | 마북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59<br>(마북동 181 - 2)         | 마북동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동백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<br>(중동 847)            | 동백동, 중동<br>일원      |
|             | 상하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 - 23<br>(상하동 435 - 12)    | 상하동 일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보정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35<br>(보정동 1266 - 4)         | 보정동 일원             |

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
| 기 관 명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할구역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수<br>지<br>구 | 풍 덕 천 1 동<br>주 민 센 터 |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<br>(풍덕천동 701 - 1)  | 풍덕천동 일원        |
|             | 풍 덕 천 2 동<br>주 민 센 터 |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<br>(풍덕천동 1051 - 2)    | 풍덕천동 일원        |
|             | 신 봉 동<br>주 민 센 터     |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<br>(신봉동 898)          | 신봉동 일원         |
|             | 죽 전 1 동<br>주 민 센 터   |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<br>(죽전동 1070 - 9)  | 죽전동 일원         |
|             | 죽 전 2 동<br>주 민 센 터   |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<br>(죽전동 1003 - 43)   | 죽전동 일원         |
|             | 동 천 동<br>주 민 센 터     |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83번길 40<br>(동천동 176 - 4) | 동천동, 고기동<br>일원 |
|             | 상 현 1 동<br>주 민 센 터   |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<br>(상현동 839)           | 상현동 일원         |
|             | 상 현 2 동<br>주 민 센 터   |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82 - 4<br>(상현동 66 - 2)    | 상현동 일원         |
|             | 성 복 동<br>주 민 센 터     |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0<br>(성복동 285 - 8)     | 성복동 일원         |

[별표 2] <개정 2012. 3. 2>

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15조 관련)

| 명 칭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 당 구 역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시농업상담소   |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7<br>(중동 676-6)          | 기흥구·수지구 관할<br>동지역           |
| 중 앙 상 담 소 |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<br>(마평동 533-8)       | 양지면, 중앙동, 역삼<br>동, 유림동, 동부동 |
| 북 부 상 담 소 |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<br>(포곡읍 삼계리 588-5) | 포곡읍, 모현면                    |
| 남 사 상 담 소 |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<br>(남사면 봉무리 438-1)  | 남사면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 동 상 담 소 |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<br>(송전리 750-3)    | 이동면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 삼 상 담 소 |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7-1<br>(고당리 35-11)     | 원삼면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백 암 상 담 소 |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 17-5<br>(백암리 448-4)    | 백암면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표 3] <개정 2012. 9. 6>

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16조 관련)

| 명 칭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 할 구 역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처 인 구 보 건 소 |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 556)            | 처 인 구 일 원   |
| 기 흥 구 보 건 소 |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3(구갈동 352-3)          | 기 흥 구 일 원   |
| 수 지 구 보 건 소 |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(풍덕천동 720)            | 수 지 구 일 원   |
| 처인구 포곡읍 지소  |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(삼계리 588-5)        | 포 곡 읍 일 원   |
| 처인구 모현면 지소  |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독점로 31-6(갈담리 309)         | 모 현 면 일 원   |
| 처인구 남사면 지소  |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(봉무리 438-1)         | 남 사 면 일 원   |
| 처인구 이동면 지소  |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(송전리 750-3)       | 이 동 면 일 원   |
| 처인구 원삼면 지소  |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(고당리 88-1)          | 원 삼 면 일 원   |
| 처인구 백암면 지소  |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(백암리 495-3)        | 백 암 면 일 원   |
| 처인구 양지면 지소  |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105번길 5(양지리 701-9)    | 양 지 면 일 원   |
| 원암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421번길 8-1(원암리 242-15) | 원암, 2 3리, 진목, 2 3리<br>전궁, 2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아곡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남산로6번길 2(아곡리 460-5)       | 아곡, 2리, 완장, 2 3리<br>창, 2 3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죽능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34(죽능리 산15)       | 죽능, 2 3, 4 5, 6리<br>목신, 2 3, 4리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대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571번길 25(대대리 423-1)    | 대대, 2 3, 4리, 정수리<br>주북, 2 3, 4 5, 6리                    |
| 백봉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48(백봉리 213-3)   | 백봉, 2 3, 4 5, 6, 7, 8리<br>고안, 2 3, 4리                   |
| 장평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599-3(장평리 597-6)      | 장평, 2 3, 4리,<br>용천, 2 3, 4리,<br>옥산, 2 3, 4리<br>석천, 2 3리 |
| 가창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로24번길 25(가창리 228-3)     | 가창, 2 3, 4 5리   |
| 고매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3-1(고매동 692-1)        | 고매, 2 4, 8통 농서1통  |
| 공세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64(공세동 281-10)        | 고매, 3 5, 6, 7통<br>공세, 2 3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기 보건진료소    |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77(고기동 103)              | 고기, 2 3통  |

[별표 4]

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(제23조 관련)

| 구 명   | 관 할 구 역   | 비 고 |
|-------|---|-----|
| 처 인 구 | 포곡읍, 모현면, 남사면, 이동면, 원삼면, 백암면, 양지면, 김량장동, 남동, 역북동, 삼가동, 유방동, 고림동, 마평동, 운학동, 호동, 해곡동      |     |
| 기 흥 구 | 신갈동, 구갈동, 상갈동, 하갈동, 보라동, 지곡동, 공세동, 고매동, 농서동, 서천동, 영덕동, 언남동, 마북동, 청덕동, 동백동, 중동, 상하동, 보정동 |     |
| 수 지 구 | 풍덕천동, 신봉동, 죽전동, 동천동, 고기동, 상현동, 성북동  |     |

[별표 5] <개정 2013. 3. 6>

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0조 관련)

| 구 분 | 일반직    | 기능직    | 별정직·정무직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비 율 | 87% 이상 | 11% 이내 | 2% 이내   |

※ 비고 :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6] <개정 2013. 3. 6>

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0조 관련)

1. 일반직 공무원

|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구 분 | 4급 이상   | 5급    | 6급     | 7급     | 8급     | 9급      |
| 비 율 | 1.5% 이내 | 7% 이내 | 25% 이내 | 32% 이내 | 26% 이내 | 8.5% 이상 |

2. 기능직 공무원
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구 분 | 5급      | 6급     | 7급     | 8급     | 9급       |
| 비 율 | 1.3% 이내 | 10% 이내 | 30% 이내 | 39% 이내 | 19.7% 이상 |

3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

|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구 분 | 연구직   |        | 지도직    |        |
|     | 연구관   | 연구사    | 지도관    | 지도사    |
| 비 율 | 3% 이내 | 97% 이상 | 12% 이내 | 88% 이상 |

4. 별정직 공무원
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
| 구 분 | 5급상당 이상 | 6급상당   | 7급상당   | 8급상당 | 9급상당 |
| 비 율 | 7% 이내   | 60% 이내 | 33% 이상 | -    | -    |



[별표 7] <개정 2013. 3. 6>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1조 관련)

(단위 : 명)

| 구 분       | 총계    | 본청 | 의 회<br>사무국 | 직 속<br>기 관 | 사업소 | 자치구가<br>아닌 구 | 읍면동 |
|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총 계       | 2,166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정무직 계     | 1    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시장        | 1     | 1  | -     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|
| 일반직 계     | 1,897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2급        | 1     | 1  | -     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|
| 4급        | 16    | 6  | 1          | 3          | 3   | 3            | -   |
| 5급        | 111   | 36 | 3          | 6          | 11  | 24           | 31  |
| 6급 이하 계   | 1,769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별정직 계     | 3     | -  | -     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|
| 5급상당      | -     | -  | -     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|
| 6급상당 이하 계 | 3    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연구직 계     | 6    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연구관       | -     | -  | -     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|
| 연구사       | 6    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지도직 계     | 35    | -  | -     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|
| 지도관       | 4     | -  | -          | 4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|
| 지도사       | 31   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기능직 계     | 224   | -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|

[별표 8] <개정 2013. 3. 6>

한시정원 직급 및 운영시한(제33조 관련)

| 관 리<br>기관별 | 소속부서  | 구분  |    | 정원<br>(명) | 운영시한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|       | 직종  | 직급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|
| 분청         | 농업정책과 | 일반직 | 6급 | 1         | 2013년 12월 31일까지 |    |
|            |       |     | 7급 | 1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|       |     | 8급 | 1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|